

안전망 및 특정 아동 대상 사례들에 관한 CALWORKS (CALIFORNIA WORK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)의 새 규정

귀하의 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비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. CalWORKs 현금 보조금은 오직 본인의 자녀(들)에 대해서만 받게 됩니다. 귀하에게 적용되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이제는 더 이상 귀하의 자녀 양육 권한을 카운티에 “임명”할 의무는 없어지지만, LCSA (Local Child Support Agency)에 아동 양육비 케이스가 있으시면 본인과 자녀(들)에게 혜택이 있습니다;
- 자녀(들)의 비양육 (부재) 부모 찾기 또는 자녀(들)의 친자 관계 수립을 포함한 LCSA의 아동 양육비 서비스들을 원하지 않으시면 귀하의 보조금 액수는 변하지 않습니다;
 - 비양육 부모 찾기와 친자 관계 수립은 나중에 본인이 필요하다면 아동 양육비를 징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; 그리고
 - 나중에, 본인이 현금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, 또 다른 아동 양육비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
- 비양육 부모가 귀하에게 제공하거나 LCSA에서 귀하 앞으로 징수한 아동 양육비 전액을 귀하가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. 해당 양육비를 카운티에 인계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귀하에게 이미 LCSA와의 미결 아동 양육비 케이스가 있는 경우, 귀하 앞으로 징수된 아동 양육비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귀하가 받은 아동 양육비 액수와 수령 일자를 계속 기록해 두십시오. 수령한 아동 양육비를 카운티에 신고하는데 필요합니다;
- 만일 LCSA에 미결 아동 양육비 케이스가 없으시면, 본인 자녀의 친자 관계 수립이 필요하다거나, 귀하의 아동 양육비를 징수하여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LCSA에 아동 양육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. 카운티에서 이러한 신청 작업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;
- LCSA에서 징수하여 귀하께 보내드린 아동 양육비는 더 이상 귀하의 가정에 지불된 지원금(aid) 상황에 사용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해당 성인의 48개월 CalWORKs 시간기록계가 지원금 개월 수만큼 “멈추지(untick)” 않습니다;
- 아동 양육비 금액을 직접 받을 때, 이제는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소득 신고 규정상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비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CalWORKs를 통해 귀하의 자녀(들)에 대한 아동 양육비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, 매월 첫 \$50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. 나머지 금액은 귀하의 CalWORKs 보조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- 귀하가 CalFresh 혜택 또한 받고 있는 경우, 귀하가 받는 모든 아동 양육비 소득은 CalFresh 수당의 액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즉시 카운티로 문의하십시오.